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영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94

발의연월일: 2024. 6. 26.

발 의 자: 권영세·이인선·이상휘

주진우 • 구자근 • 강대식

주호영 · 조승환 · 유영하

인요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이나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청문이나 공청회는 당사자등이 출석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.

그런데 공청회의 경우 2007년 법 개정을 통하여 전자공청회(현재는 "온라인공청회")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행정청이 정보 통신망을 활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이에 청문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행정청이 정보통신 망을 활용한 온라인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

행정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1조의2(온라인청문) ①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청문(이하 "온라인청문"이라 한다)을 실시할 수 있다.
 - 1.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제21조제2항에 따른 청문을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
 - 2. 제21조제2항에 따른 청문이 행정청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
 - ② 행정청은 온라인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의견진술, 증거제출 및 질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라인청문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온라인청문에 관한 적용례) 제3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문이 행정청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 31조의2(온라인청문) ① 행정청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
조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청문(이하역 보통신망을 이용한 청문(이하역 보통신망을 이용한 청문(이하역 보호 등 있다. 1.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의보호 등의 이유로 제21조제 2항에 따른 청문을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2. 제21조제2항에 따른 청문이 행정청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이상인 경우 2 행정청은 온라인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의견진술, 증거제물 및 질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 정보통신망을 구축·운영하

<u> 여야 한다.</u>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라인청문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